

■ 교육

명문 대학들, 난이도 높은 과목 이수 학생 선호

미국 명문 사립대학들은 종합적 평가(Holistic Admissions)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종합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교 성적(GPA)과 '도전적인 학습' (Rigor of Secondary School Record)이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대학들이 예외 없이 가장 높은 비중을 갖고 보는 요소가 '도전적 학습'이다. 미국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학생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어려운 과목을 몇 학년 때 선택을 해서 어떤 결과를 냈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각 고등학교마다 개설된 과목과 그 수준이 다르다. 어떤 학교는 AP 과목이 15개 개설돼 있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달랑 3개만 있기도 하다. AP 과목이 많이 개설돼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도전적인 과목을 많이 들을 가능성이 있지만 적게 개설돼 있는 학교들은 그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럴 경우 무조건 어려운 과목을 많이 듣고 좋은 성적을 낸 학생과 과목이 개설돼 있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학생들 간에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개설된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얼마나 수강했는가를 평가한다. 즉 A 학생은 3과목의 AP가 개설된 학교에서 3과목 모두를 수강하고 5점을 받은 학생과 10개 과목이 개설됐음에도 3과목만을 수강하고 모두 5점을 받은 B 학생과 비교할 때 A 학생이 훨씬 도전적인 학습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입학 사정관들은 바로 이런 점을 높게 평가하려고 한다.

한편 주립대학들은 상위권 사립대학들이 전인적 평가를 하는 것과 달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주립대학은 지원하는 학생 수가 몇 만 명이기에 때문에 상위권 대학들처럼 총체적 평가, 전인적 평가를 하기 어렵다. 제한된 수의 입학 사정관들이 그 많은 학생들을 꼼꼼하게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계량화하기 쉬운 GPA와 SAT·ACT 성적을 갖고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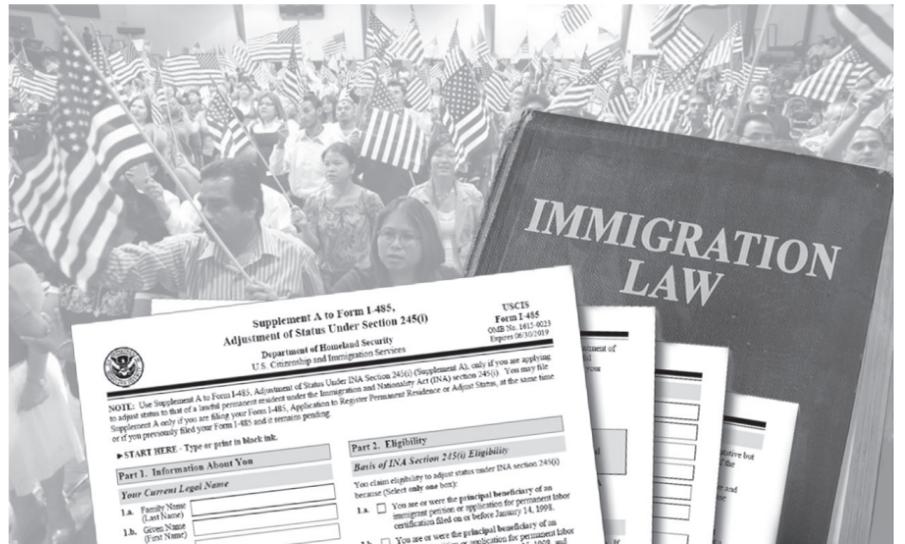
주립대학들 가운데서도 상위권 주립대학들은 에세이를 요구하기도 한다. UC 버클리는 도전적인 학습을 했는가와 GPA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 또한 에세이와 지원 학생이 캘리포니아주 학생인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주립대학이 학업적 요소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이 요소를 갖고 선발하려는 두 번째 이유는 지원 학생들 간의 학력 편차가 크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수한 학생들은 대부분 사립대학에서 장학금이나 학자금 보조를 제공하고 끌여가기 때문에 사립대학들에 비해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GPA나 SAT·ACT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한다. 주립대학은 우수 학생 확보를 위해 어너 코스를 두고 학업성적이 매우 뛰어난 시민권자 학생들을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주고 관리하기도 한다.

따라서 합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하려는 대학들이 어떤 사정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 법률 칼럼

불법체류자의 영주권신청(2): Section 245(i)



지난 1216호에서는 불법체류자의 재입국 금지기간 면제 신청 I-601(A) waiver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호에서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 불가능한 밀입국/불법체류자들이 특별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이민법 조항 Section 245(i)를 소개하겠습니다.

Section 245(i)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구제하는 한시적 -2001년 4월 30일까지- 법안이었습니다. 이러한 '한시적' 성격 때문에 이 245(i)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1) 해당 요건이 이 법이 효력이 있었던 (2) 한시적 시점에 해당하는가'입니다.

245(i)의 적용을 받으려면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 중에 승인 가능한 이민비자 청원서 (취업을 통한 I-140, 가족초청을 통한 I-130, 또는 특별한 경우의 I-360 또는 I-526)나 노동승인서 (Labor Certificate: L/C; 그 당시 ETA 750)를 이민국이나 노동부에 미국 내에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제출, 접수되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위 해당 비자청원서나 L/C가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1) Properly

Filed; and 2) Approvable when filed 되어야 합니다. 이 두 요건을 만족하는지는 법률적 해석과 과거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위 접수일자(2001년 4월 30일) 이전이고, 1998년 1월 14일 이후에 제출되었던 제출자가 2000년 12월 21일 (이 한시적 구제법안이 포함된 LIFE Act의 발효일)에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위의 요건들을 만족시킴으로써 245(i)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임이 확실하다면, I-485제출시 Supplement A라는 form 작성, 함께 제출하고 \$1,000의 penalty를 내면 됩니다.

▶ 1220호에 계속됩니다.

함영심 변호사
Sky Law Firm, P.C.
www.skyuslaw.com
young@skyuslaw.com
TEL (714) 522-1033
6 Centerpointe Dr., #700
La Palma, CA 90623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